

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안나경 상하수도행정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(2024. 3. 27.)에 따른 다자녀 기준 확대
로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 완화

나. 주요내용

○ 수도요금 감면 기준 (별표4 제5호)

- 감면대상 : 자녀 3명 이상 → 자녀 2명 이상

- 대상연령 : 18세 미만 → 19세 미만

- 감 면 율 : (현행) 3자녀 월 10톤

(개정) 2자녀 월 5톤, 3자녀 이상 월 10톤

다. 관련법령

○ 「수도법」 제38조(공급규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2인으로 변경됨에 따라,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이에 맞춰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포항시는 2024년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'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'로 완화함으로써,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오고 있음.
- 「수도법」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,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함.
- 최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 완화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 등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, 다만, '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'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상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,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또한 중요한 만큼, 향후 포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원 보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